

ESTIA 신장림 센트럴 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5.06.18)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551-8245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부산광역시 거주자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5.06.18.(수)	25.06.30.(월)	25.07.01.(화)	25.07.02.(수)	25.07.09.(수)	25.07.11.(금)~ 25.07.15.(화)	25.07.21.(월)~ 25.07.23.(수)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간 또는 일반공급 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와 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estia.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중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중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APT잔여세대 (무순위 / 임의공급 / 불법행위재공급)	○		X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6.18.(수)**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5.06.30.(월)	25.07.01.(화)	25.07.02.(수)	25.07.09.(수)	25.07.11.(금)~ 25.07.15.(화)	25.07.21.(월)~ 25.07.23.(수)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분양홍보관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분양홍보관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528-2)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분양홍보관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부산광역시 사하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까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까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과 - 20438호(2025.06.1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432번지 외 2필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 지상 29층 1개동 총 108세대

[특별공급 56세대(기관추천 10세대, 다자녀가구 10세대, 신혼부부 24세대, 노부모부양 3세대, 생애최초 9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6년 0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5000234	01	084.9988A	84A	84.9988	27.7267	112.7255	59.2793	172.0048	24.8154	55	5	5	12	2	5	29	26	2
	02	084.9734B	84B	84.9734	28.2179	113.1913	59.2616	172.4529	24.8080	53	5	5	12	1	4	27	26	2
	합 계									108	10	10	24	3	9	56	52	4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인허가 변경 또는 필지 합병 및 분할,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84A	84B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1	2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1	2
	장애인(부산광역시)	2	3	5
	중소기업 근로자	1	-	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5	5	10
신혼부부 특별공급		12	12	2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	1	3
생애최초 특별공급		5	4	9
합 계		29	27	56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동별 (라인)	층 구분	세대 수	분양가			계약금(5%)		중도금(55%)					잔금 (40%)
								1차	2차	1차	2차	3차	4차	5차	
					대지비	건축비	계	정액제	5%	10%	15%	10%	10%	10%	40%
								계약시	계약후 1개월이내	2025.08.15	2025.10.15	2025.12.15	2026.02.15	2026.03.31	입주시 (입주기간 내)
84A	55	1,5호	2층	2	161,427,600	286,982,400	448,410,000	5,000,000	17,420,500	44,841,000	67,261,500	44,841,000	44,841,000	44,841,000	179,364,000
			3 ~ 5층	6	163,389,600	290,470,400	453,860,000	5,000,000	17,693,000	45,386,000	68,079,000	45,386,000	45,386,000	45,386,000	181,544,000
			6 ~ 9층	8	165,844,800	294,835,200	460,680,000	5,000,000	18,034,000	46,068,000	69,102,000	46,068,000	46,068,000	46,068,000	184,272,000
			10 ~ 14층	10	168,300,000	299,200,000	467,500,000	5,000,000	18,375,000	46,750,000	70,125,000	46,750,000	46,750,000	46,750,000	187,000,000
			15 ~ 19층	10	170,755,200	303,564,800	474,320,000	5,000,000	18,716,000	47,432,000	71,148,000	47,432,000	47,432,000	47,432,000	189,728,000
			20 ~ 24층	10	173,235,600	307,974,400	481,210,000	5,000,000	19,060,500	48,121,000	72,181,500	48,121,000	48,121,000	48,121,000	192,484,000
			25층이상	9	175,665,600	312,294,400	487,960,000	5,000,000	19,398,000	48,796,000	73,194,000	48,796,000	48,796,000	48,796,000	195,184,000
84B	53	2,3호	2층	2	162,093,600	288,166,400	450,260,000	5,000,000	17,513,000	45,026,000	67,539,000	45,026,000	45,026,000	45,026,000	180,104,000
			3 ~ 5층	6	164,066,400	291,673,600	455,740,000	5,000,000	17,787,000	45,574,000	68,361,000	45,574,000	45,574,000	45,574,000	182,296,000
			6 ~ 9층	8	166,532,400	296,057,600	462,590,000	5,000,000	18,129,500	46,259,000	69,388,500	46,259,000	46,259,000	46,259,000	185,036,000
			10 ~ 14층	10	168,998,400	300,441,600	469,440,000	5,000,000	18,472,000	46,944,000	70,416,000	46,944,000	46,944,000	46,944,000	187,776,000
			15 ~ 19층	10	171,460,800	304,819,200	476,280,000	5,000,000	18,814,000	47,628,000	71,442,000	47,628,000	47,628,000	47,628,000	190,512,000
			20 ~ 24층	10	173,952,000	309,248,000	483,200,000	5,000,000	19,160,000	48,320,000	72,480,000	48,320,000	48,320,000	48,320,000	193,280,000
			25층이상	7	176,392,800	313,587,200	489,980,000	5,000,000	19,499,000	48,998,000	73,497,000	48,998,000	48,998,000	48,998,000	195,992,000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인지세,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주거전용, 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 면적 등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 비용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공공)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공공)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천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부산광역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②배점 <table> <tr> <th rowspan="2">배점항목</th><th rowspan="2">총배점</th><th colspan="2">배점기준</th><th rowspan="2">비고</th></tr> <tr> <th>기준</th><th>점수</th></tr> <tr> <td>계</td><td>100</td><td></td><td></td><td></td></tr> <tr> <td rowspan="3">미성년 자녀수(1)</td><td rowspan="3">40</td><td>4명 이상</td><td>40</td><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tr> <tr> <td>3명</td><td>35</td></tr> <tr> <td>2명</td><td>25</td></tr> <tr> <td rowspan="3">영유아 자녀수(2)</td><td rowspan="3">15</td><td>3명 이상</td><td>15</td><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tr> <tr> <td>2명</td><td>10</td></tr> <tr> <td>1명</td><td>5</td></tr> <tr> <td rowspan="2">세대구성(3)</td><td rowspan="2">5</td><td>3세대 이상</td><td>5</td><td>-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td></tr> <tr> <td>한부모 가족</td><td>5</td><td>-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td></tr> <tr> <td rowspan="3">무주택기간(4)</td><td rowspan="3">20</td><td>10년 이상</td><td>20</td><td rowspan="3">-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td></tr> <tr> <td>5년 이상 ~ 10년 미만</td><td>15</td></tr> <tr> <td>1년 이상 ~ 5년 미만</td><td>10</td></tr> <tr> <td rowspan="3">해당 시·도 거주기간(5)</td><td rowspan="3">15</td><td>10년 이상</td><td>15</td><td rowspan="3">-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지역(부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td></tr> <tr> <td>5년 이상 ~ 10년 미만</td><td>10</td></tr> <tr> <td>1년 이상 ~ 5년 미만</td><td>5</td></tr> <tr> <td>입주자저축가입기간(6)</td><td>5</td><td>10년 이상</td><td>5</td><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td></tr> </table>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지역(부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지역(부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table><thead><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1단계</td><td>신생아 우선공급 (25%)</td><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tr><tr><td>2단계</td><td>신생아 일반공급 (10%)</td><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tr><tr><td>3단계</td><td>우선공급 (25%)</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tr><tr><td>4단계</td><td>일반공급 (10%)</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tr><tr><td>5단계</td><td>추첨공급</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tbody></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table><thead><tr><th>순위</th><th>내용</th></tr></thead><tbody><tr><td>1순위</td><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tr><tr><td>2순위</td><td>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td></tr></tbody></table>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04.01. ~ 06.30.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11,137,162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646,374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13,364,594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205,313원~ 10,087,437원	8,578,089원~ 12,009,323원	9,031,049원~ 12,643,467원	9,733,087원~ 13,626,320원	10,435,125원~ 14,609,174원	11,137,163원~ 15,592,02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646,375원~ 11,528,499원	10,293,707원~ 13,724,941원	10,837,259원~ 14,449,677원	11,679,704원~ 15,572,938원	12,522,150원~ 16,696,198원	13,364,595원~ 17,819,459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087,438원~	12,009,324원~	12,643,468원~	13,626,321원~	14,609,175원~	15,592,02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비고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거주자 및 경상남도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단, 본주택은 60㎡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 가구 중 단독세대는 신청 불가)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04.01. ~ 06.30.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366,906원	~11,151,514원	~11,740,362원	~12,653,012원	~13,565,661원	~14,478,311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366,907원~ 11,528,499원	11,151,515원~ 13,724,941원	11,740,363원~ 14,449,677원	12,653,013원~ 15,572,938원	13,565,662원~ 16,696,198원	14,478,312원~ 17,819,459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1인 가구	160% 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7,819,459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비고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당첨자 선정방법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당첨자 선정방법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분양홍보관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7.09.(수) ~ 2025.07.18(금)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5.07.09.(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일정

서류제출 및 심사기간	2025.07.11.(금) ~ 2025.07.15.(화) 10:00~17:00
대상자	특별공급, 일반공급(1, 2순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제출장소	ESTIA 신장림 센트럴 분양홍보관(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528-2)
유의사항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6.18(수))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이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서류는 분양주체에서 6개월간 보관 후 일괄 파기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 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소명기간 내 (계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 (당첨자 발표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에 의거 계약체결 이전에 당첨자 서류 제출기한 내에 분양홍보관에 방문하시어 아래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신청 자격, 세대주, 해당 지역 거주요건,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 세대 확인 등)

※ 서류 심사를 통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가능 일정 및 시간대, 예약 방법 등 서류 제출 관련 세부 사항은 당첨자발표 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별도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 제출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한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진행이 늦어지거나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를 제출하였지만,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합니다.

※ 신청 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 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개별적으로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사업 주체는 접수된 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 (예비입주대상자 포함)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 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 자격별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견본 주택을 방문, 청약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분양홍보관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 체결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정 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정해진 기간내(7일 내)에 소명하여야 하며, 미 소명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미확인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분양홍보관 방문 청약 신청자는 청약신청 시에 제출하며, 인터넷청약 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제출기간에 제출)

※ 하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분양홍보관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하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분양 홍보관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허용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자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본인	• 분양홍보관 비치, 인터넷 청약(청약홈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무주택서약서	본인	• 분양홍보관 비치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분양홍보관 비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발급용(용도: 당첨자 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대리인 위임 불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 첨부)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배우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인터넷청약(청약홈)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서비스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발급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제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익일부터 발급가능(신청하고자 하는 특별공급 신청용으로 발급)
해외근로자 (단신부임)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제출 대상자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인 경우 생략 가능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공급을 받으려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4항)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①, ②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근로 및 파견 목적 제외),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세대원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를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제출 대상자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자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증서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확인,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 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세대주 성명, 관계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세대 이상 세대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또는 자녀	•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 • 만 18세 이상~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미혼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분리된 배우자의 주민 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3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함
		○	기본증명서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또는직계비속)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등재에 한함) • 신생아 우선공급 대상자인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분양홍보관에 비치)
		○	부동산 소유현황 (부동산공시가격 열람 포함)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 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분양홍보관에서 조회내역 확인(본인 및 세대원 전원 공동인증서 준비 필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 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추첨제 해당자)- 전체 포함하여 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자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비사업자의 경우(분양홍보관에 비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 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 확인(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세대주의 성명,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1년 이상 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 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직계존속의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피부양 직계존속 배우자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또는 자녀	· 만 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생애최초 특별공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 세대주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성년인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 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재직증명서 필수-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비사업자 확인각서	해당자	· 비사업자의 경우(근로자 및 사업자가 아닌 경우) - 분양홍보관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 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 는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진단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공고일 이후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신생아 우선공급 대상자인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자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 현황”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분양홍보관에서 조회내역 확인(본인 및 세대원 전원 공동인증서 준비 필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	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 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추첨제 해당자) • 전체 포함하여 발급(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부적격 당첨 통보를 받은자		○	무주택 소명 서류	해당 주택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청약자	• 당사 분양홍보관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부양가족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일정기간 거주 증명)이 필요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표1]**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원본(직인날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재직증명서 ② 소득금액증명원 ※ 재직증명서는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①, 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②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① 세무서 ② 등기소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 ② 해당직장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① 해당직장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2023.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② 사실증명서 (신고사실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 분양홍보관 비치 ② 세무서 또는 홈택스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경우 직인날인 불필요)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입증 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세무서 - 해당직장 -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과거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가제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 증명 제출자에 한함)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 증명	- 세무서 - 해당직장

※ 상기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 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 주체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검증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자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일반공급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사유, 세대구성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및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인감증명서	본인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I 용도 : 아파트 분양계약용 (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 서명인증서(외국인에 한함)
	○		인감도장	본인	•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대리인 위임 불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 발급분은 제외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국내 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단신부임 입증서류	본인	•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만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군 복무 기간 (10년 이상) 명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자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일반공급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포함)을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 있을 경우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시만 인정)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기록 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세대원 또는 미성년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가점제 당첨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 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 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청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 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1년 이상 부양) • 주민등록번호, 과거주소 변동사항(1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비속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 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부양 노부모(직계 존속)	•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된 노부모를 부양 중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중이지만 직계존속의 건강보험상 피부양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 구비서류(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제3자 대리인 접수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청약자 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 불가 단, 외국인의 경우 국적지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 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본인발급용)
	○		인감도장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 제출 생략 • 인감증명서와 대조 必
	○		위임장	청약자	• 분양홍보관 비치
	○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자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 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피해확인서 (HUG 안심전세 포털에서 발급)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주택	• 해당 기관의 당점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 받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아래 참조)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점으로 인한 당점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장소	계약기간	문의 전화
당첨자 계약 체결 특별공급/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ESTIA 신장림 센트럴 분양홍보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528-2)	2025.07.21.(월) ~ 2025.07.23.(수)	1551-8245

-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제한사항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계약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 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용)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본인	•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용) ※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1/2씩 균등 부담. - 계약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계약서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계약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계약서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계약서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 35만원 ※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용)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 접속,구매 및 출력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해당자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여부 확인 추가 서류	해당자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무허가건물확인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 계약 시	○		상기 본인서류	계약자	• 상기 본인 계약 시 구비서류, 항목 전체
	○		위임장	계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 분양홍보관 비치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계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 / • 본인의 인감도장
	○		신분증 및 인감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대리인 인감도장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며 현장수납은 불가)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 기간(7일)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②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 ③ 위장전입,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청약통장 등을 타인의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양수 후 청약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④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는 당사 분양홍보관에 방문하여 '계좌부활 요청서 (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본 아파트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주택지역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계약 시 동일 평면이지만 분양홍보관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될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정 또는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본 공동주택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건축허가변경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하의 면적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제기 및 공급대금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분양홍보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홍보관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건축허가 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선택품목이 있을 경우 마감재 선택사항 및 추가옵션계약(발코니 확장 등)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해제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억원 이상~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계약자와 사업주체가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 계약자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하며,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와 무관하게 중간 분양권 전매(최초 분양계약자와 소유권이전등기 시 최종 매수자까지)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계약자와 매수자가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를 징구)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BNK부산은행	113-2016-9491-03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

※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상기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무통장 입금시 계약자 성명 및 동·호수를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홍길동 101동 1403호' → 홍길동1011403 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의 분양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 사업주체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분양대금을 위 지정계좌에 대한 계좌이체 또는 온라인 수납하며 이외에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분양홍보관에서 현상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가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인지합니다.
- 청약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공급계약은 효력 상실, 해약 조치됩니다.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해약절차 진행 후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관리 대리사무

- 매도인 대승건설산업(주)는 상기 분양대상물을 분양함에 있어 우리자산신탁(주)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모든 분양금은 계약서에 명기된 우리자산신탁(주) ("입주자금관리협약"에 따라 우리자산신탁(주)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공동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계좌) 명의의 "분양수입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분양수입금계좌"에 수납되지 아니한 어떠한 납부방법도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분양계약서상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은 대승건설산업(주)에게 있으며, 우리자산신탁(주)은 본 사업의 자금관리대리사무 수임자로서 대승건설산업(주)로부터 위임받은 자금관리업무(계좌 개설 및 통장 보관 / 대승건설산업(주)의 요청[주택도시보증공사의 승인(입주자금관리협약에 따라 공동관리하는 경우) 및 (주)부산은행의 동의]에 따른 자금집행을 수행하며,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책임(소유권이전 의무, 하자담보책임, 분양대금 반환의무 등)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분양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하자 발생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대승건설산업(주)가 부담하며, 우리자산신탁(주)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본 조항은 분양계약서의 다른 조항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 시 무이자 조건으로 총 분양가격의 60% 범위 내에서 용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아래 사항들은 중도금 대출의 알선이 가능한 경우에 관한 안내사항이며,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 대출금액 · 대출조건 및 대출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보장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 분양사무소 및 분양홍보관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 상담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출 여부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으며, 이를 내용으로 하는 어떠한 보장 또는 보증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출금융기관 등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중도금대출알선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무이자로, 대출은 총 분양대금의 최대 60%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단, 계약자 개인의 신용등급, 대출한도 여부에 따라 총분양대금의 60%범위 이하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계법령 및 정부정책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담보대출 유무, 중도금 대출 여부 및 주택의 공급지역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용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홍보관 내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 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등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협약이 미체결되거나, 대출협약 체결의 지연, 중도금 대출 조건의 변경 등으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며, 공급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이러한 사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무이자 용자 등 판촉조건에 상응 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는 대출개시일부터 입주지정기간 전일까지 발생한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납부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이후 계약자가 납부하지 않아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게 잔금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인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 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중도금 대출 이자납부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사업주체가 납부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각종 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 (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시하여,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분양계약자는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으로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중도금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따라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시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의 경우 사업주체가 부도 또는 파산시 사업주체가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 기간 내에 중도금 대출금 및 중도금 대출이자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개인 신용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따라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합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 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 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외국인 토지법 및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6년 06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예정일은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통보할 예정임.

■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근린생활시설 등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됨(주택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함)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포함)

약식표기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시
84A	15,000,000	1,500,000	13,500,000
84B	15,000,000	1,500,000	13,500,000

※ 타입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계약 전 분양홍보관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BNK부산은행	113-2019-4582-06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고,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발코니 확장 공사비(계약금, 중도금, 잔금)는 상기계좌로 납부하여 하며,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101동 1501호 홍길동 → 1011501홍길동 / 101동 701호 홍길동 → 1010701홍길동 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단,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SNS, 문자 등으로 일정 안내가 가능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수분양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 하에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분양홍보관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타인 명의 등 입금자명이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미납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일괄 시공 중으로 발코니 비확장형을 선택하실 수 없고, 이로 인해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과 동시에 반드시 별도의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하셔야 하며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개로 계약해제는 불가합니다.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 변경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타입)에 따라 발코니 확장위치, 확장면적이 상이하오니 사전에 반드시 분양홍보관에 비치된 건축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조명기구, 배선기구 등 전기기구의 사양, 설치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관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으로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제공되는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달로그 및 분양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손잡이 모양)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 개폐방향,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발코니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 소홀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의 면적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 사용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생기는 침실, 거실, 주방 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해 창문을 통해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비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 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설치위치		설치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시	
전주택형	선택1	거실 + 침실1(안방)	2대	4,500,000	450,000	4,050,000	LG전자
	선택2	거실 + 침실1(안방) + 침실2	3대	5,100,000	510,000	4,590,000	
	선택3	거실 + 침실1(안방) + 침실2 + 침실3	4대	5,500,000	550,000	4,950,000	

■ 가구 / 마감재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위치	품목	적용사항	약식표기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시	
현관	중문	3연동 슬라이딩 도어(수동)	전타입	1,100,000	110,000	990,000	
	팬트리	현관 팬트리 도어 + 시스템가구	전타입	800,000	80,000	720,000	
거실	아트월	대형 박판 포세린 타일	84A	2,100,000	210,000	1,890,000	1,200*2,300
			84B	2,200,000	220,000	1,980,000	1,200*2,300
	패널시트	패널시트(거실,복도)	84A	2,100,000	210,000	1,890,000	
			84B	2,800,000	280,000	2,520,000	
	라인조명	거실 우물천장 라인조명 + 멀티등	전타입	900,000	90,000	810,000	
	바닥폴리싱타일	바닥 폴리싱타일 (거실,복도,주방)	전타입	2,100,000	210,000	1,890,000	600*600
주방	고급엔지니어드스톤	고급엔지니어드스톤 주방 상판/벽체 + 멀티콘센트	전타입	3,600,000	360,000	3,240,000	
침실1(안방)	드레스룸	드레스룸 도어 + 시스템 가구	전타입	1,000,000	100,000	900,000	

■ 빌트인 가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적용사항	약식표기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시	
빌트인 냉장고	냉장고 + 냉동고 + 김치냉장고 + 주방 팬트리	전타입	6,800,000	680,000	6,120,000	LG 냉장(BC1L2AA) LG 냉동(BC1F2AA) LG 김치(BC1K3AA)
하이브리드 쿡탑	하이브리드 쿡탑(IH2구 + HL1구 후드연동형)	전타입	350,000	35,000	315,000	HAATZ (IH366DTL)
식기세척기	가구패널형	전타입	1,100,000	110,000	990,000	LG (DIE5PT)
광파오븐	광파오븐	전타입	390,000	39,000	351,000	LG (MZ385EBT1)
복합환풍기	복합환풍기(공용+부부욕실)	전타입	800,000	80,000	720,000	HAATZ (티오람)
도기 일체형 비데	부부욕실 도기 일체형 비데	전타입	600,000	60,000	540,000	대림통상 (DB-9800)
월패드	24인치 월패드	전타입	800,000	80,000	720,000	현대HT (네트워크패드24")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BNK부산은행	113-2019-4583-02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비는 인정하지 않고,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추가 선택품목비(계약금, 잔금)는 상기계좌로 납부하여 하며,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101동 1501호 홍길동 → 1-1501홍길동 / 101동 701호 홍길동 → 1-701홍길동 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단,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SNS, 문자 등으로 일정 안내가 가능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수분양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 하에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분양홍보관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타인 명의 등 입금자명이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미납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유의사항

- 실질적인 시공(착수)시점인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시공을 위한 자재 발주등의 사유로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에 대한 신규 계약 및 변경, 해약이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르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 품목입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 일정 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결할 예정입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생산·공급의 중단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분양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분양)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계약조건(납부금액 또는 납부 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사항이니, 공동주택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 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기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따라 일부 가구 후면 및 바닥은 마감이 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에는 공기청정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고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시 별도의 무선 리모컨을 제공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설치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 됩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 리모컨으로 제공되며, 유선 컨트롤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타입별 형태에 따라 실외기실, 전면 발코니 등에 시스템에어컨 배관이 노출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아파트) 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도시형 생활주택) <table border="1"> <thead> <tr> <th>조항</th><th>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th><th>주거전용면적</th><th>수도권</th><th>비수도권</th></tr> </thead> <tbody> <tr> <td>제53조제9호가목</td><td>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td><td>60㎡ 이하</td><td>1억 6천만원</td><td>1억원</td></tr> <tr> <td rowspan="3">제53조제9호나목</td><td>단독주택</td><td rowspan="3">85㎡ 이하</td><td rowspan="3">5억원</td><td rowspan="3">3억원</td></tr> <tr> <td>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td></tr> <tr> <td>도시형 생활주택</td></tr> </tbody> </table>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다음의 유의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통사항

공통	일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홍보물 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공원, 녹지 등) 조성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공사(또는 LH공사)등이 계획·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홍보물 등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공원, 녹지 등) 조성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공사(또는 LH공사)등이 계획·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 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시된 것이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 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본공사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면에 명기된 면적, 치수 등은 실제 시공 과정에서 일부 경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 사업 부지면적 등은 법령에 따라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 경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내 대지, 공유시설물(기계실, 전기실,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등)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대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 하되, 위치의 지정이나 분할을 요구하지 않으며, 시설에 따라서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별도 분양예정임)의 다른 입주자와 공동으로 사용, 수익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정리 완료에 따른 대지경계 및 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및 암반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입주지연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부 및 외부 공용부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추가 요구 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	---

공통	일반사항	- 본 사업지 내·외 및 타 지역의 타사 또는 시공사의 타 분양 아파트의 마감 사양, 설치 부대복리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건축허가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 사양 및 부대복리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 신청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관리주체가 단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수 관리금에 대한 금원 확보와 금액 관리는 관리주체에서 정하고, 이에 따른 징수 및 사용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신탁사, 사업주체, 시공사, 금융기관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예정) - 주택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물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계약 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인·허가	-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지반 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일부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양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 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도서작성)과정에서 인·허가 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현장 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후 인·허가 변경 시 현장 여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청약 및 계약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아파트 단지명, 단지 내 편의 시설물, 안내시설물, 옥상 시설물, 동 번호, 외벽 로고 등의 위치, 형태, 재질, 명칭 2.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포장, D/A(환기구), 배기관, 옥외 시설물 등의 디자인, 위치, 개소 3. 기타 관련 법령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 한 설계변경사항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충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으며, 단지 외부와의 단차로 인하여 토목 또는 건축옹벽, 난간, 사면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되고, 주변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축조 규모와 형태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입주자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동,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단지 외부시설물 등은 심의 의견 및 인·허가 승인 조건, 공사여건, 특화디자인 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은 설계개선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따라 위치 및 면적, 개소, 형태 등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없이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관청의 인·허가 조건(건축허가, 건축심의, 전문위원회심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 협의결과 조건, 관계 기관 심의결과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수 식재계획과 조경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마감재료 및 대지 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사업지 주변 현황	- 본 아파트와 인접한 다대로, 도시철도 신장림역 등으로 인해 차량 및 도시철도 운행에 의한 소음, 진동, 먼지,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경계 바깥의 도로, 인근 상가 및 주택가 등의 현황은 청약 및 계약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지 주변에 존치건물 등이 인접하여 주변 소음, 먼지, 분진, 조망권, 세대간섭 등으로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통	사업지 주변 현황	•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외부 도로계획 및 도로관련 시설물 등은 별도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현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단지인접 도로의 폭·선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 부지와와의 관계로 인한 도로 레벨조정 등의 방편으로 옹벽 등 구조물이 시공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일부 세대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이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 레벨 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 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본공사 시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일체)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설계 변경 등이 수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합니다.
	학교	• 단지 인근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 등 시기 조정, 급당인원 변경, 설립계획 보류(취소) 결정 등 향후 여건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교수용계획 등은 해당 관청의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 초등학교 배치는 인근 효림초등학교, 중학교 배치는 영남중학교, 장림여자중학교에 배치는 가능하나 학교 배정 및 계획은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관할로 추후 학교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단지	단지계획	• 단지 녹지, 조경 식재 및 시설, 포장, 동선계획 등의 면적, 위치, 규모, 수량, 크기, 테마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부계획에 따른 단지 내 도로선형 등의 동선계획 및 단지 내의 경사로, 단차 처리방안, 조경 계획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층 소방자동차 전용구획선 위치는 담당 인·허가청과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의 레벨차 및 원활한 통행등을 고려하여 단지 내로 진입하는 비상차량 동선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입주자 차량외 지상으로 진입 가능한 차량은 소방, 치안, 이사, 폐기물 수거차량 등 입주민 공공이익과 관련된 차량만 진입 가능하며 개별 사유로 지상에 차량 진입이 필요한 경우 관리사무실과 협의하여 진입하여야 합니다. • 소형 우편(택배)차량은 지하1층으로 진입이 불가합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소방용 비상차로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경보음, 야간 차량불빛, 공회전에 의한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각 동 저층부 세대는 기존 도로와 단지 내 도로와의 인접 또는 레벨차이에 의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이 영향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해당 세대의 여건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물(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재활용 분리수거장, D/A(환기구), 자전거 보관소, 주차장 램프 지붕 등) 등은 위치 디자인 및 재질, 구조,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재활용 분리수거장으로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수거차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그릴창, 제연용그릴창, 옥외 경사로 및 지하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웅류 등은 본공사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주변도로 및 단지 외부시설, 아파트의 배치구조, 동호수별 위치 단지 내 조경공간 등으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단지게획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전기·기계실, 환기창, D/A(환기구) 등)과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이 주거동의 전·후·측면 등의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세대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진동, 조망 저해, 냄새, 해충에 의한 사생활권,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위치 및 개소는 건축 인·허가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본공사 시 규모, 위치, 개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등 비주거 부분의 옥상 및 단지 주변에는 에어컨 실외기, 급배기, 환기팬, 기계장비, 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저층 세대에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 냄새, 분진,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야외 조경용 조명 및 공용시설 조명 등에 의해 일부 세대는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외부의 차선 및 교차로,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보도 등은 인·허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서 임의로 재조정할 수 없습니다. • 외부 조경 식재 및 시설물(녹지, 잔디, 수목, 전기·통신시설물(공용·외부조명 포함), 단지 홍보용 사인물, 휴게시설, 운동시설, 조경시설물, 보도·차도 포장재, 수목관리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으로써,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특정서비스에 관한 책임 및 발생비용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부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주동 1층 외부에 설치되며, 위치와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간섭받거나, 소음피해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단지의 배치 특성상 향별, 층별 차이, 세대 별 창호 위치 등의 상이에 따른 불편. 2. 본 아파트 계약 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 간의 향이나 층에 따른 불편. 3. 공공장소인 조경공간과 동별 주출입구, 부대시설, D/A(환기구),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대,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등의 설치 및 통행에 따른 불편. 4. 단지 내 주출입구, 부출입구, 주차출입구, 부대시설, 경비실 등 단지 내외 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불편. • 외부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불가 및 단종, 외부환경 및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환풍, 실외기실, 배기탑 및 제연환풍, D/A(환기구)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 일부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에서 소음 및 진동, 시선 간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경관조명으로 발생하는 유지, 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 변경 및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 내·외 시설물(출입구, 주차출입구, 경비실, 부대시설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야간조명, 자동차 전조등 등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시설의 위치 및 규모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활용 분리수거장은 지상1층에 설치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시설이 해당 시설의 설비층에 설치될 수 있으며, 배관이 아파트 공용부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설치 상세계획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조망권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별	• 옥탑 일부구간 설치되는 경관조명과 외벽에 설치되는 조명형 사인물로 인해 빛 반사,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지	동별	•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지하주차장 경사로 등), 주차램프 등과 인접한 세대는 불빛에 의해 조망권 생활권 등각종 환경권의 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각 동 일부 세대 전·후면 녹지 내 대형수목 식재로 인해 일부 조망권이 간섭받을 수 있으며, 수목의 높이는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시설 등 이용에 대해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배치 및 이용여건 등에 대해 청약 및 계약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엘리베이터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환기를 적절히 시행하고 관리 차원의 예방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의 위치 및 동, 층, 호수에 따라 코아 및 주출입구 부분의 평면, 단면, 창호 형태 등의 계획은 동별 위치에 따라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획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출입구,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출입구에는 도로 레벨에 맞춰 계단, 경사로 등이 위치마다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고, 인·허가조건 및 관련 인·허가청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에 출입구 레벨 및 출입 방법 등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출입구,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옆·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해 소음발생과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며, 상부층은 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탑층 옥상수조,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 등으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펌프 작동에 의한 일부 저층세대의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및 관리사무소 등으로 인해 소음 및 조망간섭, 사생활(프라이버시 등), 음식물 냄새 등 각 종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붕 및 옥탑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공용조명, 위성안테나, 공정 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 소음, 진동, 기타 등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등이며 기타시설로 자전거 보관대, 재활용 분리수거장이 설치될 예정으로 인접 저층세대는 외부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차량 출입구와 인접한 동의 저층부는 램프를 통해 진출입하는 차량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전조등으로 인한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상가에 인접한 세대는 상가 옥상층 지붕 및 난간 등에 의하여 조망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주출입구,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 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공용홀 내 창호의 개수와 크기가 주동마다 상이하므로 채광 및 환기가 불리한 세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는「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며 층간소음 및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외관계획	• 본 아파트의 외관 및 색채, 마감, 동출입구 및 저층부 석재(또는 석재뿔칠)패턴, 옥탑, 경관조명, 부대시설 외관등의 세부 디자인은 단지 외관 차별화를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측벽의 BI 설치 개수 및 위치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외벽 등에 장식물, 조명 및 별도 마감재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에 부착되는 장식물, 난간, 조명,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 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주동의 외벽에 부착되는 사인물, 장식물은 분양홍보물 등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외관(입면, 창호, 난간, 로고 등의 형태 및 색), 공용부분의 계획(조경, 옹벽, 석축, 주동출입구, 지하출입구 등)은 본공사 시 설계, 시공성, 편의성, 구조 등의 개선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단지	주차장	• 본 아파트는 근린생활시설의 주차가 지상 1층에 별도로 계획되어 있어, 입주자와 근린생활시설 이용자와의 간섭을 분리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 지하 주차장은 지하1층~지하4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차량진출입구의 주차차단기 설치로 외부차량 진입 시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주차차단기 설치 위치는 여건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지하주차장 층별 각 주동의 접근 및 주차 진출입구, 램프의 위치, 부대시설 및 기계/전기실 등 관련 공간 계획으로 인해 각 주동별로 주차장 이용에 거리와 동선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으니 계약전 인허가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차 충전 시스템이 주차장에 설치될 예정이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추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금형 콘센트가 설치되는 일부 주차장면은 일반주차장과 공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기기의 설치,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단지 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 기관 협의에 따라 본 공사 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주차면 위치,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공간의 일반주차 폭은 2.5m, 확장주차 폭은 2.6m, 경형주차 폭은 2.0m로, 장애인 주차 폭 3.3m 계획되었으나, 시공오차에 따라 폭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 확보를 위하여 기둥간격이 일부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은 각종 설비배관 및 배선이 노출되어 설치되며, 별도의 천장 마감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전기실/ 전기실/ 펌프실/ 저수조 등 각종 기전시설 공간이 지하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와 인접한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배수 트랜치는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일부 동 지하 인근 급기, 배기용 환이 설치되어 있어 주변으로 소음 및 열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 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용시설	• 지하에 계획된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기계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으로 인하여 인접세대의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환풍 등은 본공사 시 위치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전기 유지보수를 위해서 발전기가 가동되면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하고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니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 위치 및 우·오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TPS(통신실)은 필요한 층마다 설치되어 있으며, 법적 시설로서 그 위치 면적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CCTV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법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시스템 설치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단위세대	창호	• 주동 창호 등은 구조 계산 결과에 따라 형태 및 재질,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외부창호의 제조사, 크기 및 두께, 재질, 색상, 디자인, 손잡이, 하드웨어, 유리사양, 개폐방향, 설치위치 등은 구조 검토 결과 또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분양홍보물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날개 벽체 길이 등은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현관방화문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단위세대	평면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기본 제공품목, 공간 분할 등에 대해 청약 및 계약체결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동일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홍보물 등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류, 세탁기류,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가전 일체) 및 가구 등이 길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치냉장고, 세탁기는 다용도실 출입문의 규격에 따른 규격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 사이즈를 확인하여 계약을 하여야 함) • 단위세대 실내 천정고는 거실기준 2.3m이며 일부 시공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실외기실, 다용도실 등 발코니 부분과 욕실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설비배관 구성에 따라 세대 우물천정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렌지후드 환기 배관으로 인해 일부 주방 상부장의 내부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환기 배관은 세대 천장, 발코니 천장, PD등을 관통하여 외부에 배출되는 구조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동일 주택형의 단위세대도 발코니 세대 간 조건에 따라 서비스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외벽 및 창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코니	• 발코니 바닥에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며, 천장에는 상부층 세대의 하향식피난구 및 사다리가 시공됩니다. • 본 아파트는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일괄 시공 중으로 발코니 비확장형을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이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구, 마감재	• 세대내 수전 위치는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가구장 상부 몰딩 및 아트월의 형태는 본공사 시 마감 개선을 위해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장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되어 온수분배기 설치로 인해 수납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온수분배기 하부는 별도의 마감이 되지 않음) • 세대 내부의 가구(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 설치 부위의 비노출면(천장, 벽체, 바닥)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욕실장 후면 본 타일 미시공, 불박이장, 신발장 및 주방가구 천장·후면·측면·바닥 마감재 미시공 등) • 세대 내부의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시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경, 비틀림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공간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넘침 방지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출입시 문턱에 의한 신발 걸림 등이 있을 수 있음) •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 자재의 이음부는 자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함. 색상 나눔 부위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구 힌지, 레일 등 가구하드웨어는 본공사 시 제품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세대 도어(현관방화문, 실외기실, 발코니 도어 등)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포인트 타일 요철로 인해 줄넘마감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공사 시 타일 나누기 및 단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방,아트월,욕실, 발코니 등)

단위세대	가구, 마감재	• 아트월, 현관바닥, 욕실, 다용도실 바닥 등의 타일 나누기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 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해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 등을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및 욕실, 주방의 경우는 상부층 세대 배관점검 및 보수를 위해 부득이 하부층 세대에서 천장배관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조적 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설치되는 수전류 및 각 욕실의 마감자재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도기류는 본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 불가, 단종, 품질확보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 제품으로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외부에 시공되는 공장 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 기준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전기,기계 설비	• 단지 내 각 세대는 개별난방으로 계획됩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방가구 및 불박이장 하부에는 난방 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렌지후드 환기 덕트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구가 상부장 내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점검구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가스배관은 노출배관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은 침실(출입문 뒤편) 중 한 곳에 설치되며, 본공사 시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쪽에 설치되는 일괄제어 스위치 기능 중 가스차단 기능을 실행할 경우 가스밸브가 자동으로 차단되며 복구를 할 경우에는 주방에서 입주자가 직접 수동으로 복구해야 합니다. 또한 승강기 호출기능은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위한 호출기능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유부위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배선은 시공 방식 및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주방 빌트인 가전류, 현관 중문, 각종 가구 등)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위치 및 설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침실에 적용되는 전자 스위치의 기능은 조명기구 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제어의 통합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조명기구 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제어 기능을 분리하여 개별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바닥배수구, 오배수관 입상, 수전금구류, 악세사리류, 위생도기, 스프링클러 헤드 등의 위치는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내진법규에 의거하여 위생/소방용 수조의 규격, 재료, 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통신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사업자에게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홈네트워크 월패드, 주방TV, 욕실폰의 전화 수신기능은 국선전화를 가입한 세대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급수급탕 분배기는 욕실천장에 설치될 예정이며, 본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급수, 급탕 분배기 설치위치는 별도의 마감에 되지 않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욕실에는 바닥 배수를 위한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되며, 본공사 시 시공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바닥 배수구, 수전, 우수 선홈통 등은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슬리브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으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부 세대 세탁 배수 배관은 유지관리 목적으로 하부세대에 노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우·오수 선홈통의 위치 및 개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전기,기계 설비	- 에어컨 등의 가동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세대 내로 전달될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전유 공간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전기설비 마감재(분전반, 통신단자함, 조명기구, 스위치, 콘센트, 월패드, 주방TV 등)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 네트워크	- 홈네트워크외부제어시스템 및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 네트워크망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전용 인터넷 회선 설치 비용 등은 입주자의 부담입니다.(관리비에 포함하여 청구 또는 별도 청구) - 가전기기 외부제어시스템 및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입주인이 반드시 세대 내 무선인터넷(Wi-Fi AP)를 설치하여야 하며(통신사 무관), 제어방식에 따라 일부 기기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서비스 이용조건은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음)
	부대복리 시설	- 관리사무소, 방재실, MDF실, 주민공동시설등 부대복리시설의 위치 및 규모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시 홍보물,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 집기는 본공사 시 재질, 색상, 디자인,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형태,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마감재, 기본 제공 품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등은 공간, 기본 마감재 및 내부 집기류 일부가 제공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등의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는 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 관리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 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등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사가 시공하므로 마감재 및 기본 제공 품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등의 일부 공간은 입주시 A/S센터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부대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 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부대시설의 구성 및 건축 계획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실 배치 계획, 구조, 창호의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 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구성됩니다.
	근린생활 시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내·외·옥상부 공간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분양홍보물상에 설명된 것과는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 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과 외부 도로와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근린생활시설 출입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이용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 다. - 근린생활시설은 지상1층~지상2층에 위치하며, 근린생활시설의 입간판은 임의대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승인권자와의 사전협의후(지침준수 등)설치하여 야 함) - 타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 등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주택법」제48조의2 제1항, 「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의2)

-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2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전방문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6년 06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먼저 도래할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사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내란, 외환, 계엄, 천재지변, 문화재 출토, 매립폐기물, 암반발견,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변경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사회재난 등과 같은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준공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입주지연 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단지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 제세공과금(인지세 제외)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태만으로 인한 문제(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 등)는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합니다.)
- 본 공동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일정기간 입주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개시 전 부정입주를 통한 상행위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 해제 및 고발조치 됩니다.
- 추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세대 관리비(전기, 수도 등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일 이후 분양계약자의 50% 이상이 소유권이전 등기 및 입주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유주는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을 구성하여 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사업주체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전에 건축물을 관리할 목적으로 사업주체는 관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관련 용역계약에 의거 부과되는 관리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주차장 주차대수

: 총 169대 (공동주택 108대, 오피스텔 57대, 근린생활시설 4대)

• 설치대수 : 총 196대 (공동주택 130대, 오피스텔 62대, 근린생활시설 4대)

※ 주택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여건 변화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등에따라 주차대수 및 주차단위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9의2)

구분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1층 ~ 지하4층	2.3M	2.3M

■ 내진 성능 및 능력

최대지반가속도	내진능력(MINI등급)
0.239g	VII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02312025-104-0000200호	일금. 삼백오억팔천구백이십육만원 (₩30,589,26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 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상복합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주택 이외의 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함) 및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④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보증서발급(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5.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 ④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보증서 발급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15조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27조4항1호에 따라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제21호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표시 미대상입니다.

■ 본 아파트는 500세대 미만으로 「주택법」 제39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표시 미대상입니다.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원 / VAT 포함)

구 분	건축	전기	소방
상 호	더 KEUN's 건축사사무소	(주)현대이엔지	(주)디에이치기술단
금 액	1,100,000,000	58,080,000	19,800,0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시공사	자금관리
상 호	대승건설산업(주)	대승종합건설(주)	우리자산신탁(주)
주 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평로 278, 2층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평로 278, 2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
사업자등록번호	262-87-02169	324-87-01226	107-81-85459

■ 분양홈페이지: www.estia.co.kr

■ 분양홍보관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528-2번지

■ 분양문의: 1551-8245

※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홍보관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본 공고와 공급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홈페이지 및 분양홍보관에서 확인바랍니다.